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40003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 2009.08.19 www.kongsiru.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14.06.05

공시루

정 보 공 개 서

공시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공시루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 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85-1 (신기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080-691-600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없음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80-691-6005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http://ftc.go.kr/data/hwp/20080306_103723.hwp)
(<http://www.ftc.go.kr/laws/laws/laws.jsp?lawDivCd=08>)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콩시루	콩시루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85-1 (신기동)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3.02.05	김진	080-691-6005	없음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417-01-19723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본부를 인수함	콩시루	콩시루	2013.02.05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116-10	김영종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콩시루라 합니다)의 내용

○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콩시루	
상 호	콩시루 00점	
상표(서비스표)	콩시루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305480000
		서비스표 등록번호 : 4101111610000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기타 콩시루와 관련된 브랜드 홍보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웰빙 콩나물국밥 전문점 콩시루입니다.

콩시루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콩시루는 10년 동안의 외식업을 통해 얻은 철학이 있습니다. 음식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맛, 다음은 고객중심입니다.

작은 배려와 배품의 미덕 "고객중심"

손님의 취향이나 극히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 생각하는 마음은 고객이 다시금 콩시루를 찾게하는 이유가 되었으며, 나아가서 고객들이 콩시루를 알리는 열성 판촉사원의 역할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음식의 세계화

저희 콩시루는 전통음식을 계승하고 한단계 발전시켜, 이제는 음식도 엄연한 문화와 예술의 경지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정신으로 뜨거운 한류열풍의 한 주류가 되어 세계 속에 우리 음식을 알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콩시루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불황을 모르고 달려온 외식사업, 이 시대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알리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고자 움츠렸던 다리를 힘차게 발돋움 합니다. 언제나 많은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어릴적 맛보던 그맛 "어머니의 손맛"

불황속에서도 저희 콩시루가 고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중요한 요인은 한평생 정성과 인고로 길고 닦아온 어머니의 손맛에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한번 찾으면 마음속 깊이 담고 가는 진한 국물 맛은 '콩나물 국밥' 하면 '콩시루'를 떠올리게 하며, 저희 콩시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맛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빙 콩나물국밥 전문점 콩시루입니다.

콩시루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콩시루는 10년 동안의 외식업을 통해 얻은 철학이 있습니다. 음식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맛, 다음은 고객중심입니다.



콩시루 '콩나물 국밥'은 왜 맛이 있을까?

음식사업에 있어 맛은 핵심사항이자, 성공 포인트이다.
맛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콩시루의 맛의 비밀을 알아보자



1. 신선한 해산물

청정해역 남해안에서 갓 잡아 올린 20가지 이상의 해산물을 이용한 육수는 이 시대 최고의 콩나물 국밥 맛을 선사합니다.

2. 특급 양념소스

음식 맛 까다로운 전남도민의 입맛을 12년동안 사로잡으며 검증받은 육수 맛의 비법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특급 양념소스에 있다.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11년						
2012년						
2013년				823,493		

○ 당사는 현재 재무제표 작성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였으며, 그 근거자료는 별지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콩시루	2011년			
	2012년			
	2013년	823,493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진	대표	2013.02.05 ~ 현재	콩시루 대표	가맹사업 운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13년 12월 31일	1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관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해당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02.08.23 출원 2005.01.12 등록	출원 4120020017349 등록 4101111610000	김영종	2015.01.12 (2015.01.12)
콩시루		2005.01.12 출원 2006.04.12 등록	출원 4120050000743 등록 4101305480000	김영종	2016.04.12 (2016.04.12)

○ 당사가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소유권자인 김영종으로부터 상표사용을 승낙 받아 위 표에 기재된 가맹본부의 사용기간까지 당사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콩시루 가맹사업 현황

1. 콩시루를 시작한 날 : 2000년 03월 05일

○ 콩시루 가맹사업은 2000년 03월 05일부터 운영해왔고, 당사는 2013년 2월 5일 콩시루 가맹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콩시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콩시루	콩시루	이수경	2000.3 ~ 2008.12.31	전남 여수 신기 75 우림필유 101 1104
콩시루	콩시루	김영종	2009.1 ~ 2013.02.05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116-10
콩시루	콩시루	김진	2013.02.05 ~ 현재	전라남도 여수시 망마로 85-1 (신기동)

3.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콩시루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11.12.31			2012.12.31			201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7	16	1	19	18	1	20	19	1
서울									
부산	1	1		1	1		1	1	
대구				1	1		1	1	
인천									
광주									
대전	1	1		1	1		1	1	
울산	1	1		1	1		1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1	10	1	10	10	1	12	11	1
경북									
경남	3	3		4	4		4	4	
제주									

※ 2011년~2012년 현황은 이전 가맹본부에서 운영한 내용입니다.

4. 최근 3년간 콩시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11	15	5	-	4	-	16
2012	16	2	-	-	4	18
2013	18	2	-	1	-	19

※ 2011년~2012년 현황은 이전 가맹본부에서 운영한 내용입니다.

5. 공시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공시루 이외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 공시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1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13년 말 가맹점 수	201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전체	19	344,905	830,400	133,200	19개점 대상
서울					
부산	1	해당없음	-	-	5곳 미만
대구	1	해당없음	-	-	5곳 미만
인천					
광주					
대전	1	해당없음	-	-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	-	5곳 미만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11	360,109	830,400	133,200	
경북					
경남	4	해당없음	-	-	5곳 미만
제주					

○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사업자별 연평균매출액: {(상품공급액/영업개월수) × 12개월} × 12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당사에서 가맹점에 공급한 물품 공급액을 근거로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7.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 광고·판촉 지출 내역

○ 당사는 공시루 가맹본부는 2013년에 공시루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9. 가맹금 예치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여천남지점	전라남도 여수시 신기동 137	061-684-1153

○ 귀하가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일에 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귀하가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예치하는 방법은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다음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공수루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0.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공시루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등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30일 소요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귀하가 콩시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75,300천원(부가세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기존설비 철거공사, 상수도 공사, 소방공사, 확장실 및 전기증설 공사, 가스설비 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5,500	계약체결일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영업개시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시 인도된 제품 및 제공된 서비스(교육 및 인력정보제공의 대가 등)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
교육비	2,200		교육 개시 전 계약해지	교육개시	-
홍보비	3,300		영업개시 이전 계약해지	영업개시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2,000	계약 체결일	- 가맹금, 물품대금 미지급 - 계약 종료 후 조치 미이행 (영업표지 철거 등 원상회복 의무)	계약의 종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잔존 채무·손해배상액을 정산하여 잔액을 상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000
가맹비	5,500
교육비	2,200
홍보비	3,300
계약이행보증금(부가세 없음)	2,0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2,800			99㎡ 기준
필수설비	주방집기	창조인테리어	15,000	계약체결일	공사/공급 전 계약취소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창조인테리어 외 1개사	42,000	계약체결일		
최초 공급 상품 비용	가맹본부	1,400	계약체결일		
기타 개점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조달	4,400	-	POS, TV, 냉난방기	
금융비용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으며 기존설비 철거공사, 상하수도 공사, 소방공사, 화장실, 전기증설공사, 가스설비공사에 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위 표에 기재된 비용 중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점사업자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 가맹본부는 점포 개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내립니다. 가맹희망자의 입지선정이 지연되어 영업이 늦어지는 데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가맹희망자가 부담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공시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주방집기	영업용 냉장고, 싱크대, 작업대, 주방비품, 12구 가스렌지, 반찬냉장고, 컵살균 소독기, 의자, 탁자	가맹계약시 별도계약	지정(권유)업체(창조인테리어)
인테리어	목공공사, 닥트공사, 타일공사, 전기공사, 조명공사, 페인트 공사, 도배공사, 설비공사, 바닥공사	가맹계약시 별도계약	지정(권유)업체(창조인테리어)
간판	전면간판, 돌출간판	가맹계약시 별도계약	지정(권유)업체(센스광고)
기타	POS	자체조달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료	가맹본부	연 0~ 연 220	광고 시행 전	광고 실시 전	광고 시행 이후	
점포환경 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재고 비교 확인	1회/3월	문의 : 당사 (080-691-6005)
회계관리	회계장부 확인	1회/1월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이전하려는 경우에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운영권을 이전받는 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총계	7,500	가맹계약의 전체기간(종료시까지)을 부여함. 다만, 위 금액은 현재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양수도 당시의 신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변동가능함.
교육비	2,2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홍보비	3,300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가맹본부로부터 부여받은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 및 간판시안과 가맹본부만의 고유 외장 인테리어 등의 영업표지를 영업장 기타 영업설비로부터 즉시 철거 및 제거하여야 하며, 비용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되는 경우 외에는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결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이미 제공한 공급품, 비품, 소모품, 시설설비 등을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된 상품의 완전물에 한하여 가맹본부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출고가격으로 상환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점포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 또는 가맹본부에 대한 신용을 해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귀하가 콩시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품목	규격	거래 형태	거래 상대방	비고
부동산	해당없음				
용역	인테리어		권유	창조인테리어	
	간판		권유	센스광고	
설비	영업용 냉장고 외 8종		권유	가맹본부	
상품	해당없음				
원·부재료	육수 외 4종		강제	가맹본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당사는 콩시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콩나물 국밥(얼큰한 맛)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콩나물 국밥(담백한 맛)		
콩나물 김치찌골		
별난 콩나물 국수		
한방모주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을 경쟁업체 또는 다른 가맹점에 공급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1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다른 가맹점사업자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2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 시정 요구한 날부터 2개월 후에 계약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콩나물 국밥(얼큰한 맛)	6,000	홈페이지에 공지 및 서면을 통한 공문 발송	
콩나물 국밥(담백한 맛)	6,000		
콩나물 김치전골	8,000 (2인분이상)		
별난 콩나물 국수	5,000		
한방모주	1,000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콩나물국밥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콩시루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직경 500m(반경 250m)	가맹계약서 (별지에 영업지역을 표시할 수도 있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갱신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콩시루’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콩시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3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제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제6조 제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 콩시루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제6조 제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제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을이 제3조의 가맹점의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4조의 영업표지 및 지식재산권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9조의 인테리어 설비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14조의 가맹비의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11조, 17조의 교육·훈련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21조의 감독 및 시정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22조의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23조 3항의 대금의 결제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을 연체한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27조의 영업시간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휴업한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28조의 복장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30조의 회계자료의 운영 및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32조의 광고 및 판촉행사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제33조 제1항
○ 을이 제32조의 광고 및 판촉행사에 불참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제33조 제1항
을이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개점이 불가능한 경우	제33조 제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33조 3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33조 3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3조 3항

○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위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수정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동안 기존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080-691-6005)

○ 단, 양도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귀하에게 통지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양수인은 영업개시 전까지 당사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양도는 당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홍보비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및 홍보비를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상속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상속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상속인, 가맹본부의 계약 체결(7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대리행사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대리행사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사업자, 대리경영자, 가맹본부의 계약 체결(7일 소요) → 대리권 이전 완료
업무위탁	불가능	-	-

○ 상속인 및 대리경영자는 영업개시 전까지 당사가 정한 소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비 2,200천원(부가세 포함)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7.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귀하는 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당사와 협의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콩나물국밥을 취급하는 음식점 ○ 동일업종의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당사 (080-691-6005)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당사는 콩시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24시간	일주일에 6일 이상 영업	문의: 당사(080-691-6005)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자율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보관상태	담당자 매장 방문 → 관리·감독 항목에 따라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후 당사 보관	1회~2회/1월	관리팀	
조리 상태		1회~2회/1월	관리팀	
위생 상태		1회~2회/1월	관리팀	
서비스 상태		1회~2회/1월	관리팀	

- 당사는 감독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당사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 관리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리 표

점포번호 :		일 자 :		시간 :	
분 야	체 크 항 목	양호/불량	의견/조치사항		
보관상태	식자재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유통기간 등을 잘 지키고 있는가?				
조리상태	가맹본부가 정한 조리법에 따라 조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는가?				
위생상태	주방 및 홀 등 점포를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서비스상태	고객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가맹점주 및 직원으로부터의 요구사항					
점검결과					

8.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당사는 콩시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세부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광고시행	대중매체 광고
	상품광고+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 75%	광고비 25%		
	가맹점모집광고	전액	없음		
판촉		없음	전액		

-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부담합니다.

- 다만, 판촉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당사에서 비금전적인 부분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귀하는 광고 디자인(전단지, 책자, 자석전단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판촉활동을 할 경우 판촉활동의 자료, 문구,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당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9.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귀하는 콩시루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기타 이와 준하는 영업비밀에 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메뉴, 영업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의무는 본 계약의 유지기간은 물론이고 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되며 위 내용을 위반하여 당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0.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총(45)일	75,800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0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29	
가맹금 예치	- 가맹금 예치	D-28	13,000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27(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2~24(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21(19일)	62,8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2(2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가맹점사업자의 개인사정, 교육이수 정도, 가맹점포의 여건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귀하는 10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귀하가 10쪽에 기재된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보험증서를 제공합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1. 상품에 따른 마케팅 방법 등 경영지도 2. 해당 지역의 특성과 시장동향 분석에 따른 개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에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문의: 당사 (080-691-6005)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의 운영방안 지도 3. 가맹점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시 그 해결을 위한 경영지도	필요 시 가맹본부에 요청하고 가맹본부는 경영지도를 위반 방법 및 일정을 안내하고 이를 귀하가 동의하면 진행함	가맹점사업자 부담(실비)	

4. 신용 제공 등 내역

○ 당사는 귀하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당사는 콩시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점 전 교육	조리교육 및 점포 실무교육	현장실습교육	개점 3일 전	필수 교육
수시교육	메뉴 추가 및 실무교육	현장실습교육 집단강의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교육
특별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청내용	현장실습교육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수 교육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귀하가 콩시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4일	최초 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교육	1일	무료	필수 교육
특별교육	1일	무료	필수 교육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귀하가 당사에서 정한 교육 및 훈련을 불참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의 가맹점 개점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상품공급의 중단 및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경우, 귀하의 가맹점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080-691-600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 ~ 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번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과·면세점영사업자 포함)			처리기간
4832-460-2353-567					즉 시
성명(대표자)	김진	주민(법인)등록번호	700419-26*****		
상호(법인명)	롬시루	사업자등록번호	417-01-19723		
업태	음식점업	종목	한식 음식점업		
사업장	전라남도 여주시 탐마로 85-1 (신기동)				
(단위 : 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수입금액)			납부세액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2013/02/01	2013/06/30	375,629,200	186,008,200	189,621,000	5,803,986
2013/07/01	2013/12/31	447,864,542	255,270,542	192,594,000	7,905,256
		이 하	이 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14 년 03 월 31 일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담당자	강형순				
연락처	061)688-0221				
여수세무서장					